

영남대학교 교육중점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 2013.10.16. 법인이사회
개정 2013.12.18. 법인이사회
개정 2014.12.17. 법인이사회
개정 2016. 8.17. 법인이사회
개정 2017. 4.19. 법인이사회
개정 2018. 2. 7. 법인이사회
개정 2020. 2. 5. 법인이사회
개정 2020. 8.19. 법인이사회
개정 2021.10.20. 법인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육중점 전임교원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중점 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직위) 교육중점 전임교원(이하“교육중점 교원”이라 한다)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로 한다.

제4조(임무) 교육중점 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및 대학원 강의
2. 교과목 및 교재 개발
3. 기타 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5조(소속) 교육중점 교원은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임용<개정 2016.8.17.>

제6조(임용권) 교육중점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8.17.>

제7조(임용기간) 교육중점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육중점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의 결과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를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제8조(임용계약) 교육중점 교원은 총장과 해당 교육중점 교원과의 계약으로 임용하며, 교육중점 교원의 임용계약서에는 임용직위,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재임용요건 등을 명시한다.

제9조(임용기간 계산) ① 제7조의 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학교법인 영남학원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4.19.,2021.10.20.>

제10조(당연면직) 교육중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달한 때
3. 이 규정에 의거 재임용을 받지 못할 때
4.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절 신규임용

제11조(신규임용시기) 교육중점 교원의 신규임용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규임용) ① 교육중점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이하“공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이하 “특채”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1. 공채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초빙분야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신설 2013.12.18.>
2. 긴급충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초빙분야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신설 2013.12.18.>

② 교육중점 교원 공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중점 교원 특채에 관한 절차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의2 제2항의 “학부(과)”는 “교육중점 교원이 담당할 교과목의 주관 학부(과)”로 본다.<신설 2013.12.18.>

제13조(자격) 신규임용 교육중점 교원은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 분야 신규임용 교육중점 교원은 교육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중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5조(신규임용 절차) 교육중점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장이 신규 임용한다.

제16조(신규임용 시의 직위) 신규 임용되는 교육중점 교원은 조교수로 임용된다.

제17조(신규임용 제출서류) 교육중점 교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이력서 1부
3. 연구업적물 각 1부
4. 학력증명서(졸업, 학위, 수료, 이수증명서) 학위별 각 1부

5. 성적증명서 학위별 각 1부
6. 경력증명서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8.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9. 신원진술서 2부
10.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제3절 재임용

제18조(재임용 시기) 교육중점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19조(재임용 요건)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육중점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제9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강의평가 점수 요건
2. 필수연구업적 요건
3. 종합심사평정 적격 요건
4. 강의담당시수 요건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2.17.,2018.2.7.,2020.8.19.>

제20조(강의 평가) 재임용 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강의 평가는 우리 대학교 “강의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필수연구업적 평가) 재임용 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필수연구업적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4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2.5.>

제22조(종합심사평정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① 재임용 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종합심사평정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기초교육대학장과 선임직 위원으로서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6인으로 구성하고, 선임직 위원은 기초교육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기초교육대학장은 종합심사평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종합심사평정위원회의 판정은 강의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 소속 부서에 대한 공헌도, 교육과정개발 참여 정도, 개발한 교육과정의 우수성,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육중점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격(최우수, 우수, 보통), 부적격으로 판정하되, 종합심사평정표는 [별표 2]와 같다.

④ 종합심사평정위원회는 재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재임용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종합심사평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종합심사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종합심사평정위원회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종합심사평정을 완료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재임용 절차) ① 총장은 재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에 대해 재임용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장을 거쳐 해당 교육중점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속 변경된 교육중

점 교원은 기초교육대학에서 재임용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8.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육중점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재임용을 신청한 교육중점 교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육중점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임용 탈락자에 대하여는 재임용 거부 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중점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재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이 재임용 심의 신청기간 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교육중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면직된다.

제24조(재임용 제출서류) 재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연구업적물 각 1부
2. 종합심사평정위원회 회의록 1부
3. 종합심사평정 결과 1부

제4절 승진임용

제25조(승진임용시기) 교육중점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제26조(승진요건) ① 교육중점 교원은 부교수 직위까지만 승진가능하며,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연수
2. 강의평가 점수 요건
3. 필수연구업적 요건
4. 종합심사평정 요건
- ② 교육중점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소요연수는 6년으로 하고,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 ③ 승진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재임용과 승진임용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승진임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7조(강의 평가·필수연구업적 평가·종합심사평정) ① 승진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강의 평가는 제20조와 같다.

- ② 승진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필수연구업적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2.5.>
- ③ 승진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종합심사평정은 제22조와 같다.

제28조(승진임용 제출서류) ① 승진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과 같다.<개정 2018.2.7.>

1. 필수연구업적물 각 1부
2. [별표 4]의 승진임용에 관한 추천서 1부
3. 종합심사평정위원회 회의록 각 1부
4. 종합심사평정 결과 각 1부

② 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에 관한 추천서는 소속기관장이 교양학부장 또는 교과목 주관학부(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2.7.>

제29조(승진임용 제한) 승진임용대상 교육중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결의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정직 18월
 - 나. 감봉 12월
 - 다. 견책 6월

제30조(승진임용 절차) ① 총장은 승진임용 후보자를 승진임용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속 변경된 교육중점 교원은 기초교육대학에서 승진임용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8.19.>

- ② 소속 대학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의 추천에 따라 승진임용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 ③ 총장은 소속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된 교육중점 교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승진임용한다.

제31조 (승진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교육중점 교원의 이의신청 등) ① 승진임용 후보자가 제26조의 승진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명자료를 갖추어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해당 교육중점 교원의 승진임용 미추천에 대한 학부(과)장 의견서, 종합심사평정위원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32조(복무) 교육중점 교원은 학생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제33조(겸직금지) ① 교육중점 교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겸직이 허용된 경우

② 교육중점 교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직을 겸직하려면 사전에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기관에 출강하는 경우
2. 다른 기관의 비상근직에 임용되는 경우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으로 허용된 경우

③ 교육중점 교원 겸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책임시수) ① 교육중점 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2시수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 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8., 2014.12.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3시수 범위내에서 책임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은 시수에 대해서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2.18.>

제35조(신분보장) 교육중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휴직) ① 교육중점 교원의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4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0.20.>

①의2 교육중점 교원에게는 정관 제44조제1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0.20.>

② 교육중점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수

제37조(보수) ① 교육중점 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중점 교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하고, 영남학원 교직원보수규정, 우리 대학교 교직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징계

제38조(징계) 교육중점 교원의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9조(학부(과) 교수회의 참여 제한) 교육중점 교원은 소속 학부(과)의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학부(과)장은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학부(과)의 교수회의에는 교육중점 교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교원인사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1조(그 밖의 사항) ① 교육중점 교원에게는 임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년, 파견, 명예

퇴직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임용 업적 요건<개정 2014.12.17.,2018.2.7.,2020.8.19.>

가. 강의평가 점수 요건

구분	학기별 강의평가점수의 3개 학기 합계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246점 이상	재임용 심사 직전 3개 학기
조교수	246점 이상	재임용 심사 직전 3개 학기

※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점수 요건(학기당 82점 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필수연구업적 요건

구분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 (기초의학 포함), 공학계열	실기계열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100점 이상	100점 이상	100점 이상	임용기간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제외)
조교수	100점 이상	100점 이상	100점 이상	

다. 종합심사평정 적격 요건

구분	재임용 종합심사평정 결과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적격(보통 이상)	임용시작일 ~ 종합심사평정 시
조교수	적격(보통 이상)	임용시작일 ~ 종합심사평정 시

라. 강의담당시수 요건

구분	평가대상기간 학기별 강의담당시수 평균	평가대상기간
부교수	11시수 이상	임용기간
조교수	11시수 이상	임용기간

※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44조(휴직의 사유)와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 휴가규정 제6조(병가), 제9조(특별휴가)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강의담당시수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를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변동 발생 시점에 산정된 강의담당시수가 11시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포함한다.

[별표 2] 종합심사평정표

종합심사평정표

1. 대상자 : 소속						
성 명	직 위	최초 임용일	생년월일	평균강의담당 시수(4개학기)	학기별 강의평가점수의 3개 학기 합계	
2. 평가대상기간	임용시작일 ~ 종합심사평정 시					
3. 종합심사평정 위원회	재적위원	명	출석위원	명	불출석위원	명
4. 종합심사평정	적 격			부적격		
	최우수(), 우수(), 보통()			부적격()		
5. 종합심사평정위원회의 심사평정에 대한 종합의견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중점 교원의 ①강의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 ②소속 부서에 대한 공헌도, ③교육과정개발 참여 정도, ④개발한 교육과정의 우수성, ⑤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육 중점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심사평정 출석위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년 월 일

위원장

(인)

총 장 귀하

[별표 3] 승진임용 업적 요건

가. 강의평가 점수 요건

구분	학기별 강의평가점수의 11개 학기 합계	평가대상기간
조교수 → 부교수	957점 이상	승진임용 심사 직전 11개 학기

※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점수 요건(학기당 87점 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필수연구업적 요건

승진 직위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 (기초의학 포함), 공학계열	실기계열	평가대상기간
조교수 → 부교수	300점 이상	300점 이상	300점 이상	승진임용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 이내

다. 종합심사평정 요건

구분	재임용 종합심사평정 결과	평가대상
조교수 → 부교수	우수 2회 이상	승진임용 예정일로 역산하여 재임용 종합심사평정 최근 3회 결과

[별표 4] 승진임용에 관한 추천서

승진심사 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위	
목 적	이 추천서는 교육중점 교원 승진임용 대상자의 강의의 우수성, 학사행정 협조 정도, 교원윤리 및 품위유지 등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의의 우수성		
학사행정 협조정도		
기 타 (교원 윤리 및 품위 유지 등)		
종합의견		

추천자 : _____ 학부(과)장 _____ (인)